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0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낚시·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Ⅲ. 검토의견

1.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개정안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7. ~ 10. (생 략)

② (생 략)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2.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

----- 수상레저기구-----.

② -----
-----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기구-----

-----.

1. 2. (현행과 같음)

③ -----

----- 수상레저기구-----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
른 화학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 3. (생략)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
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 7. (생략)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
저활동을 한 사람

<신설>

_____수
상레저기구_____
-----.

제61조(벌칙)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_____

-----.

1. (현행과 같음)

2 _____

2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
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u>2의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 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 <u>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u>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수상스키, 조정, 카약 및 무동력요트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주로 외부동력 없이 바람과 파도 등의 자연력이나 인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달리 현행법상 조종면허가 요구되지 않으며, 필수 안전교육 이수 등 조종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¹⁾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²⁾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수상레저사업자를 제외)는 조종면허 등 특별한 제약없이 해당 기구를 조종할 수 있음.

2) [수상레저사업장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 현황]

(단위 : 대)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3,565	16,500	15,314	18,149	18,822	18,593
동 력	7,182	2,543	2,476	2,477	2,581	2,511
무동력	6,383	13,957	12,838	15,672	16,241	16,082

* 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선박 및 관련 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³⁾⁴⁾

<3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중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동력				무동력			
		사망	실종	중상	경상	사망	실종	중상	경상
'23년	27	2	1	1	19	1	-	-	3
'22년	33	3	-	-	24	2	-	-	4
'21년	45	1	-	1	35	-	1	-	7
총 계	105	6	1	2	78	3	1	0	14

*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⁵⁾에 대해서만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⁶⁾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의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음.

3)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는 모두 198건으로 이 중 카약,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가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인명사고 중 사망사고 9건 중 3건이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4) “수상오토바이 몰다 사고…물에 빠진 남성 건지고보니 술에 취한 상태”, 문화일보, 2023.05.28.

5)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말함.

6)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이에 개정안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재수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중을 구분하여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방지하고 수상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음주·약물 조종 금지 관련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처벌 비교>

구분	대상	처벌내용	
		현행	개정안
동력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동력	(동력수상레저기구 외) 수상스키, 파라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이드, 수상자전거 등	처벌 규정 없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제3항은 선박의 동력 유무와 관계없이 유선사업자 및 선원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고,⁷⁾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⁸⁾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행 의무)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를 말한다.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수상안전 확보라는 공익과 음주 조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할 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마찬가지로 음주·약물 복용 상태의 조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와 ② 국민에게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공포 후 시행일 전까지 준비 기간(예시, 공포후 1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9)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음주 · 약물 조종 금지 관련 유사입법례

구 분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도로교통법	
주취/ 조종 (운전) 금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27①	유선사업자와 선원 §12③ 도선사업자와 선원 §16조③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 운전자 §44①	자전거등 운전자 §44①
	처벌 수준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제3호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0제4호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148의2③제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56제11호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148의2③제2호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48의2③제3호	
약물 조종 금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28	유선사업자와 선원 §12③ 도선사업자와 선원 §16조③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 운전자 §45	자전거등 운전자 §50⑧
	처벌 수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제5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0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48의2④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56제1호

참고2

개정안과 유사입법례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주취 중 조종(운전) 금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 구 조종자 §27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27①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 운전자 §44①	자전거등 운전자 §44①
	처벌수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제3호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제3호	무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4①제2의2호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48의2③제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56제11호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148의2③제2호	
음주 측정요구 불이행	대상	동력수상레저기 구 조종자 §27②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27②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 운전자 §44②	자전거등 운전자 §44②
	처벌수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제4호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①제4호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4①제2의3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148의2②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56제12호
약물복용 등 상태에서 조종(운전) 금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28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28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 운전자 §45	자전거등의 운전자 §50⑧
	처벌수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제5호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제5호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4①제2의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48의2④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56제1호